

2016년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2016년도 소방전공학과·응급구조학과 졸업자, 의무소방원 전역(예정)자 및 항공 운항관리 전문가 등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중앙소방학교장

□ 주요 변경 내용 : 선발인원 및 시험과목 세부범위 일부 변경.

1. 선발인원 : 총 462명

가. 선발예정 직급 : (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나. 선발인원 : 462명

《소방전공학과·응급구조학과·의무소방원 전역(예정)자: 소방사 447명》

(단위 : 명)

구 분	합계	소방전공학과			응급구조학과			의무소방 전역	비 고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합 계	447	95	84	11	299	269	30	53	
서울	34	10	8	2	22	15	7	2	변경
인천	72	-	-	-	72	69	3	-	
광주	5	5	5	-	-	-	-	-	
대전	17	3	3	-	14	13	1	-	
세종	8	3	3	-	5	4	1	-	
경기	60	20	18	2	30	25	5	10	변경
강원	36	-	-	-	30	28	2	6	변경
충북	14	2	2	-	10	8	2	2	변경
충남	21	-	-	-	20	18	2	1	
전북	26	16	15	1	10	9	1	-	변경
경북	30	12	11	1	8	7	1	10	
경남	85	20	15	5	45	40	5	20	변경
창원	39	4	4	-	33	33	-	2	

《전문인력(항공 운항관리전문가) : 소방교 15명》

시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인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운항관리전문가 채용 선발은 지역 구분없이 선발 배치. 2차 체력시험 미 실시

2. 시험일정

시험구분	공 고 일	시 험 일 정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 18.(목)	3. 3.(목) 09:00 ~ 3. 9.(수) 18:00	
필기시험	3. 28.(월)	4. 9.(토) 10:00~(60분)	4. 21.(수)
체력시험	4. 21.(수)	5. 9.(월) ~ 5. 13.(금)	6. 3.(금)
서류전형			7. 4.(월)
신체검사	6. 3.(금)	6. 8.(수) ~ 6. 10.(금)	불합격자 개별통지
적성검사	온라인(예정)	5. 16.(월) ~ 5. 20.(금)	면접위원 배부용
면접시험	6. 15.(수)	6. 22.(수) ~ 6. 28.(화)	7. 4.(월)

3. 시험구분 및 합격결정

*선행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시험 응시가능

가. 필기시험 : 3과목(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5점)

구 분	시험과목	비고
① 소방전공학과 졸업자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② 응급구조학과 졸업자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③ 의무소방원 전역(예정)자		
④ 전문인력(항공 운항관리전문가)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세부출제범위 >>

- 소방학개론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생활영어 :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 문항형식 및 시험시간 : 객관식 4지 택1형, 1문항당 1분

○ 합격결정 : 매과목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결정(2명 이하 3배수)

나.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추후 공지

다. 체력시험

○ 종목 및 평가점수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일으 키기(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이상
왕복오래 달리기(회)	남	57~59	60~61	62~63	64~67	68~71	72~74	75	76	77	78이상
	여	28	29~30	31	32~33	34~36	37~39	40	41	42	43이상

- 측정방법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붙임2 참고]
- 합격결정 : 6종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30점)이상 득점한 자
- ❖ 도핑테스트 실시 : 응시인원의 10%이내 무작위 선정 실시

★ **관련근거**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14.12.31)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라.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 신체검사 : 시험실시기관 지정병원(천안시 소재), 검사료(50,000원) 개별납부
-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7항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판정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붙임3 참고]
- 적성검사 :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 실시, 검사결과 면접시험에 제공

마. 면접시험

- 면접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별표5 참고]
- 평가요소 및 점수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집단면접(30점) + 개별면접(30점) ⇒ 60점을 환산하여 10점 반영

-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30점)이상 득점한 자(단,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바.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면접 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위(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에 대해 전원 합격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 채용예정인원에 미달 또는 결원 보충 필요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

4. 응시자격 등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항에 의거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

나. 선발분야별 자격요건

- 소방전공학과 졸업자 : 전문대학 이상의 소방학과 등 소방전공학과를 졸업한 자
-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 응급구조학과 졸업자(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
- 의무소방원 전역(예정)자 : 의무소방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거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예정인 자
- 전문인력(항공 운항관리전문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붙임 5 참조)

다. 거주지 제한 : 없음

라. 응시연령 : 20세 이상 ~ 40세 이하(1975. 1. 1. ~ 1996.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 「병역법」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여야 한다.

※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의2(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소집 등에 의한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1세

5.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각 단계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미표기 시 가산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보훈상담센터 ☎ 1577-0606)하여야 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2016. 3. 3.(목) 09:00 ~ 3. 9.(수) 18:00

나. 방 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원서접수 사이트(119gosi.kr) 이용

다. 응시수수료 : 5,000원(*휴대폰 및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처리비용 별도)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

라. 유의사항

○ 사진등록 : 사진파일(규격 3.5cm × 4.5cm), 해상도 100DPI이상으로, 얼굴의 정면이 나타나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등록 (※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 할 수 없음)

○ 접수확인 : 응시생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증 출력(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 기간에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로그인 →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기간 중 기재사항 수정은 가능하나, 마감 후 수정불가

○ 응시분야별(소방·응급·의무소방)·지역별 중복(복수) 접수 불가

마. 원서접수 취소

○ 기 간 : 2015. 3. 3.(목) ~ 3. 16.(수) 18:00까지

○ 방 법 : 원서접수 사이트(119gosi.kr) 이용 취소

○ 수수료 반환 : 납입한 수수료 전부

○ 원서접수 기간 중 취소자는 재 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 만료 후 취소자는 재 접수 및 시험응시 불가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은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응시희망자는 본인의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한지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각종 증명서를 허위로 제출 시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라. 필기시험 응시자는 당일 시험응시표, 신분증 및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고, 필기·체력·면접시험 등 각 시험 단계별 시작 30분전까지 입실 또는 등록 완료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마. 필기시험장에는 전자계산기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바. 본 시험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041-550-0963,0965)

< 참고사항 >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 조직	1)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점검)
	2)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 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 이론	1)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 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 이론	1) 소화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붙임 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p>악 력 (k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p>배 근 력 (k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p>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에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붙임 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야병·트리빠노쫂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계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구 분	내 용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12. 귀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 ※ 적색약 중에서 약도는 제외 <2016.2.18.字 개정>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흉위	가. 신장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 조항 “폐지” <2016.2.18.字 개정>
16.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7.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 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별표 참조)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동의서는 체력시험 당일 배부 및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붙임 5]

계급 환산 기준표

구분 계급	국가·지방공 무원 또는 별 정직공무원	경 찰 공무원	군 인	교육공무원			정부관리 기업체
				초·중 ·고등학 교교 원	전문대학	4년 제 대학교원	
소방령 지방 소방령	5급		소 령	18~23 호 봉	13~18 호 봉	11~16 호 봉	과 장 차 장
소방경 지방 소방경	6급 (3년이상)		대 위	14~17 호 봉	11~12 호 봉	9~10 호 봉	계 장 , 대 리 (3년이상)
소방위 지방 소방위	6급	경 위	중위·소 위·준 위	11~13 호 봉	9~10 호 봉	7~8 호 봉	계 장 , 대 리
소방장 지방 소방장	7급	경 사	상 사	9~10 호 봉	8호봉 이 하	6호봉 이 하	평 사 원 (3년이상)
소방교 지방 소방교	8급	경 장	중 사	4~8 호 봉			평 사 원
소방사 지방 소방사	9급	순 경	하 사 (병)	3호봉 이 하			평 사 원

비고

1.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 15조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경력경쟁채용한다.
2. 교육공무원란중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하고,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3. 군인란 중 괄호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소방원을 경력경쟁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